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9.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8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98회 임시회 제5차위원회 (2003. 9.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황 동 연

가. 제안이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행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덕2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가 아현제1동 일부와 공덕제1동으로 구성됨에 따라 동아파트 단지내 아현동 400번지외 1필지 7,499.1㎡를 공덕제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함. (제2조 관련 안 별표)

※ 아현동 400번지외 1필지는 아파트단지가 미준공 상태로 확정측량 완료하고 성과도 발급된 가지번인 관계로 추후 행정구역(법정동)변경 예정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공덕2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가 아현동 400번지상 대지 6,338.8㎡(약 1,921坪) 및 아현동 401번지상 대지 1,160.3㎡(약 352坪)와 공덕제1동으로 구성됨에 따라 아현동 400번지와 1필지를 공덕제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함으로써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2개의 행정동을 하나로 통일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물은 2003. 4. 16일 제95회 임시회에서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어 원안 채택되었고, 2003. 5. 12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의 경계변경승인이 통보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전의 아현동 주민수는?

○ 답변요지(황동연 주민자치과장) : 215필지, 380세대, 1,140명.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아파트 단지 주변도로의 소유자와 관할 등은?

○ 답변요지(황동연 주민자치과장) : 소유자는 서울시이며 아파트 담장이 동 경계선임으로 도로는 아현1동 관할임.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법정동도 바뀌는가?

○ 답변요지(황동연 주민자치과장) : 행정동만 바뀜.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8.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행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덕2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가 아현 제1동 일부와 공덕제1동으로 구성됨에 따라 동아파트 단지내 아현동400번지의 1필지 7,499.1㎡를 공덕제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함.(제2조관련안 별표)

※ 아현동400번지의 1필지는 아파트단지가 미준공 상태로 확정측량 완료하고 성과도 발급된 가지번인 관계로 추후 행정구역(법정동)변경 예정임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2003.7.18 법률 제6927호) 제4조제5항

4. 조 례(안):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마포구의회 의견청취(원안의결), 서울시 승인(행정13100-1337 (2003.5.12))

나. 입법예고(2003.6.20~7.1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 8.18)

라. 신·구조문대비표 1부.

마. 행정구역변경대상 현황도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아현제1동 법정동 관할의 일부지역 관할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공덕제1동 법정동 관할의 일부지역 관할란중 “이동지역 및 신공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이동지역, 아현동415-17에서 동405-1에 이르는 도로에 접한 이남지역의 공덕동 관할구역내의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일부 지역 및 신공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단, 공덕제1동 관할구역 제외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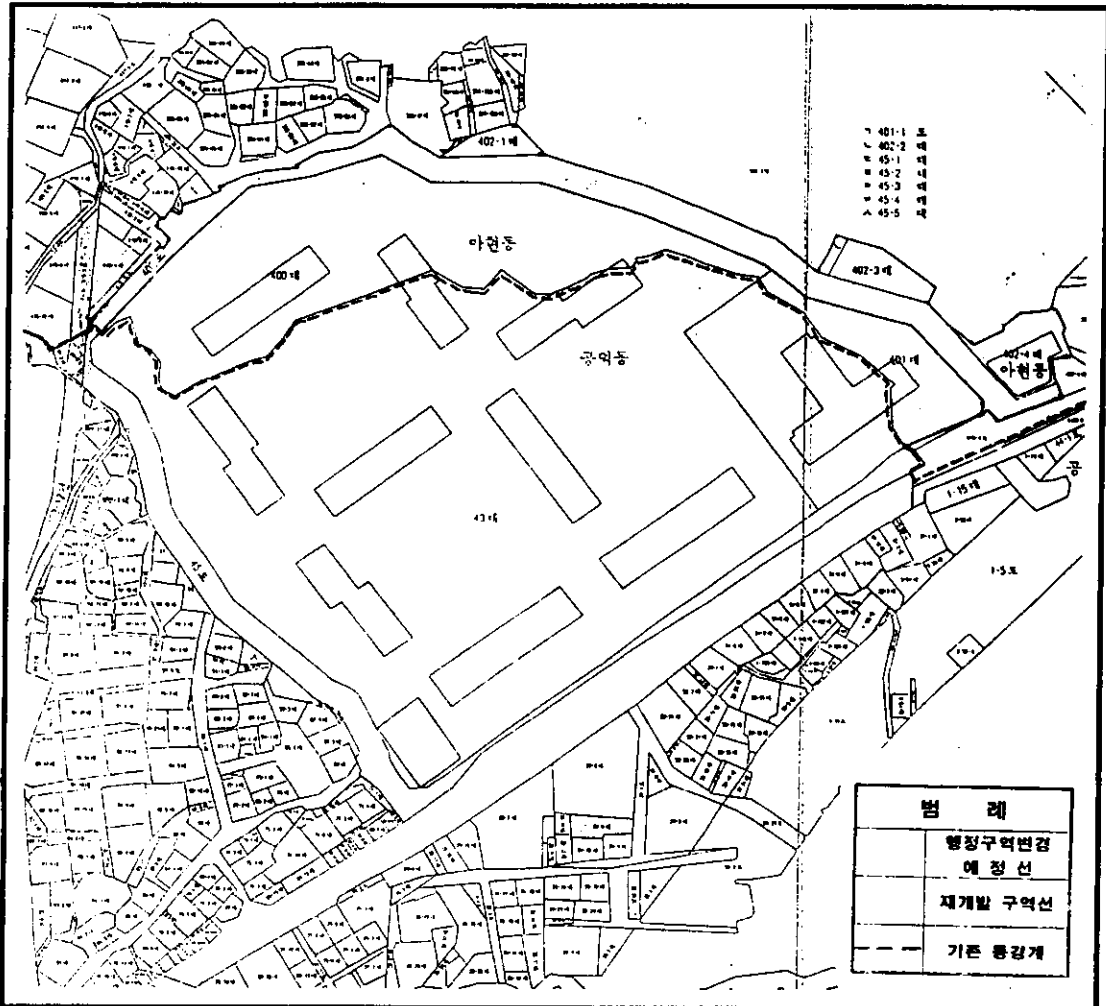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 분	동사 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구 분	동사 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전지역 관 할	일부지역 관할				전지역 관 할	일부지역 관할
마 포 구	아현 제1동	아현동 417-7		아현동중 마포구 이동지역 (단서신 설)	마 포 구	아현 제1동	아현동 417-7		단, 공 덕제1동 관할구역 제외
	(생 략)					(현행과 같음)			
	공덕 제1동	공덕동 29-6		공덕동중 105의 3 울 기점으로 동10 5의 51울 경유 동 118의 1에 이 르는 도로 이동지역 및 신공덕동장 관 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공덕 제1동	공덕동 29-6		이동지역, 아현동415-17에 서 아현동405-1 에 이르는 도로에 접한 이남지역의 공덕동 관할구역내 의 아파트단지예 포함된 일부 지역 및 신공덕동장 관 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생 략)				(현행과 같음)					

행정구역 변경대상 현황도

변경전 : 마포구 아현제1동 → 변경후 : 마포구 공덕제1동



*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에 의거 작성